

# 역량기반 전공 교육과정 평가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1.02.22. 개정 2022.04.04.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역량기반 전공 교육과정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평가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역량기반 전공 교육과정평가위원회의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직무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심의한다.

1. 학과 역량기반 전공 교육과정개발에 대한 평가 및 심의
2. 학과 CQI에 대한 평가 및 심의
3. 역량기반 전공 교육과정개발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
4. 역량기반 전공 교육과정개발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

## 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교육과 연구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교내외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의 교내위원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교외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교육전문가 등으로 한다. <개정 2022.04.04.>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22.04.04.>

## 제4조 (임기)

- 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## 제5조 (위원장의 직무)

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## 제6조 (회의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.

제7조 (간사)

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교무팀 직원으로 한다.  
<개정 2022.04.04.>

제8조 (회의록의 작성)

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9조 (경비 등 지원)

-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 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21.02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